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56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서영교·김문수·송재봉

정동영・차지호・이정헌

김교흥 · 정태호 · 이춘석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 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 (안 제4조의2 신설).
-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과 그 준수

-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 마.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 바. 이사회의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 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 아.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 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 2 신설).

- 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위원을 위촉함(안 제87조).
- 차.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일부 확대함(안 제88조제1항).
- 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9조제4항).
- 타.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해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사장, 감사 등 임원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을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綜合編成"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으로, "報道에"를 "보도에"로, "專門編成을"을 "전문편성을"로,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보도·제작·편성의"로,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를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로,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를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 · 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 ②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제3항제6호 중 "그 밖에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을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 및 개정과 그 준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
-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46조제2항 중 "11人으로"를 "13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분야의"를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개인·법인 및 단체의"를 "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을 제외한 개인 및 법인·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는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 는 사람 2명
- 4. 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 5.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①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 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 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제9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 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사장의 임면(任免)제청
 - 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 7의3.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관한 사항

제50조제2항 전단 중 "任命"을 "임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사장은"을 "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 이내의 홀수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임명제청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8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등 구체적 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50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50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70 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토론 등을 통해 평가하여야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장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 자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 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원회는 사장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최종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평가위 원회의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점수 중 70% 이상이 반영되도록 하

여야 한다.

- ⑨ 기타 평가 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와 방법 및 효력, 최종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 회가 정한다.
- 제53조의2(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집행기관은 이 법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계의 視聽者를"을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로,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를 "자 중에서 편성위원회의"로 한다.
 -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업자
- 제88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이용요금 또는 이용약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제87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로 한정한다)
- 5.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제8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위원회에 한정한다)

제8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 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88條第1項第1號 및 제2호에 따른"을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제106조제1항제1호 중 "第4條第4項의 規定에"를 "제4조제3항에"로,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를 "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한 자

- 1의5.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7. 제46조제9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4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9.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 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임기 만료 시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	第2條(用語의 定義)
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u><신 설></u>	28.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해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
	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사
	장, 감사 등 임원 또는 집행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u>를 말한다.</u>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放送事業者と 放送編成責任	③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
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	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
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	<u> 송편성책임자를</u>
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	
야 한다.	
	<u>.</u>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④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	<u>성보도에전문편성</u>
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	<u>을방송채널사용사업자</u>
- 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는 방송프로그램 보도・제작・

製作 종사자의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제정하고이를公表하여야한다.

<신 설>

<신 설>

- 편성의------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 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 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4조의2(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생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현행 략)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第1項 및 第 2項의 規定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 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 表하여야 한다.
- 1. ~ 5의2. (생 략)
- 6. 그 밖에 許可 또는 승인 당 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 행 여부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②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 • 제작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 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과 같음)

③
<u>.</u>

- 1. ~ 5의2. (현행과 같음)
 - 방송편성규약 제정 및 개정과 그 준수----
 -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
 -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 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행 여부
 - ④ (현행과 같음)

- 등) ① (생 략)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 ②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③ ------방송에 관한 전문성,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설>

-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13명으로----.
 -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다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는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및 그 밖 의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 명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등 록되어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4. 공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신 설>

- ④ ~ ⑧ (생 략)
-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

 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3. (생 략) <u><신 설></u>

<신 설>

<u>5.</u>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	추천하는	사람 1명
(4)	~ (8) (현행과 같음)

9		
	- •	

- 1.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①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여야 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① 제9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第47條(理事의 任期) ①理事의 任 第47條(理事의 任期) ① 이사의 期는 3年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하다.
 - 1. ~ 6. (생 략)
 -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신 설>

<신 설>

8. ~ 15. (생 략)

② (생략)

第50條(執行機關) ① (생 략)

②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사 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야 한다.

<신 설>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 1. ~ 6. (현행과 같음)
- 7. 사장의 임면(任免)제청

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 장 임명동의

7의3.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 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8. ~ 1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第50條(執行機關) ① (현행과 같 음)

-----임면---. 사장을 임 명할 경우에는----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임

<u>③</u> ~ <u>⑥</u> (생 략)

<신 설>

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40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u>④</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6 항과 같음)

제50조의2(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 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하 여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 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 정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 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임명

<신 설>

<신 설>

제청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 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

 여야
 한다.
- ⑧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50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한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u> 견인
- 제50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만료 일 7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의

<u>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u> <u>야 한다.</u>

- ②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평가 대상자로 선정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정책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토론 등을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장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

 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

 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⑥ 평가위원회는 사장 임기 만 료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최종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한 후 최종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임명 제청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점수 중 70% 이상이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⑨ 기타 평가 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와 방법 및 효력, 최종 후보자 선정 방법에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53조의2(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각 第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 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 를 두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 事業者는 <u>각계의 視聽者를</u> 대 표할 수 있는 <u>者중에서 방송통</u> 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②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
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이사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
직되지 아니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7條(視聽者委員會) ①
01队(加地名女只百)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u>방송사업자</u>
②
<u>각 지역과 분야 및 각</u>
계층의 시청자를
<u>자 중에서 편성위원회의</u>
1 0 11 1 2 0 11 12 1 1

③ (생략)

직무) ① 視聽者委員會의 權限 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 (생략)

② (생략)

第89條(視聽者 評價프로그램) ① ~ ③ (생 략)

<신 설>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다 | 第90條(放送事業者의 義務)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③ (현행과 같음)

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第88條(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 4. 이용요금 또는 이용약관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 치된 시청자위원회로 한정한 다)
- 5.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제87 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위원회에 한정한다)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第89條(視聽者 評價프로그램)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기 본법 | 제24조에 따른 방송통 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 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 다.

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 -----제88조제1항

項第1號 및 제2항에 따른 視聽 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 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⑤ (생 략).

- 第10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第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 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u>第4條第4項의 規定에</u> 위반하 여 <u>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u>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u>者</u>

<신 설>

<신 설>

<u>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u>
따라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방송사업자
<u>8 8 7 명시</u>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106條(罰則) ①
5100[床(音)只])(1)
1 레시크레이커세 터기
1. <u>제4조제3항에</u> <u>편성</u>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 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 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1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 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1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아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 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1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아 니한 자

<u><신 설></u>	1의4.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
	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
	거나 그 운영을 방해한 자
<u><신 설></u>	1의5.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
	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제46조제9항을 위반하여 회
	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8. 제4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회
	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9.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